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4715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52,586,050원, 농어촌특별세 2,629,300원, 지방교육세 5,258,6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0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7. 11. 8. 'A'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자상거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2019. 6. 30. 폐업신고를 했다(이하 이 업체를 'B 개인사업체'라고 한다).

나. B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2018. 6. 8. C, D 등 다른 발기인 4명과 함께 전자상거래업, 식자재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를 설립하고, 2020. 3.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6. 2. [redacted]군 E 대 75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2020. 6. 11. 피고에게 취득세 52,586,050원, 농어촌특별세 2,629,300원, 지방교육세 5,258,600원을 납부했다.

라. 원고는 2020.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감면 경정을 청구했다.

마. 피고는 2020. 7. 10. 원고의 경우 B 개인사업체인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바. 원고는 2020. 7. 27. [redacted]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0. 8.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0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소매업만 영위한 B 개인사업체와 달리 제조업을 영위했고, B 개인사업체에 비해 고용은 8배, 매출은 4배나 많으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니라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은 제1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0

① B 개인사업체는 2017. 12.부터 2018. 3.까지 월 평균 8명을 고용하다가 2018. 4.부터 2019. 6. 폐업 시까지는 고용 인력이 없었는데 반해, 원고는 2018. 6. 8. 설립 후 2018. 7.에 직원 7명을 채용하고 2019. 7. 기준 17명, 2020. 6. 기준 65명을 각 고용했다.

② B 개인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17년 2기 0원, 2018년 1기 65,145,442원, 2018년 2기 36,210,565원, 2019년 1기 34,480,000원이었으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18년 2기 365,924,546원, 2019년 1기 420,252,594원, 2019년 2기 351,781,410원이었다.

③ B 개인사업체는 가공포장육 등 가공된 식재료를 구매하여 이를 밀 키트(meal kit)로 조합·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했으나, 원고는 2018. 7. 1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아 식재료를 가공하여 밀 키트를 조합·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했다.

3) 그러나 갑 제2, 4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설립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의 상호는 B 개인사업체의 상호인 'A' 앞에 '주식회사'를 덧붙인 것이고, 원고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인 '[redacted]구 F'은 B 개인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원고의 경영자는 B이다.

❷ 원고는 2018. 6. 14. B에게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 원고의 영업과 B 개인사업체의 영업은 가공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0

뿐 모두 'A'이라는 표현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❸ B 개인사업체의 경우 2018. 4.부터 고용 인력이 없고, 2018년 2기 매출액 36,210,565원 중 29,000,000원과 2019년 1기 매출액 34,480,000원 전액이 원고에 대한 매출이어서 2019. 6. 30. 폐업 시까지 사실상 원고에 종속되어 영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❹ 원고는 설립 당시인 2018. 7.에 직원 7명을 채용했다가 2018. 8. 2명, 2018. 11. 1명, 2019. 7. 7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점차 사업을 확장한 것이어서 고용과 매출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B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0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